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등 5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정보제공 수수료 및 교육비 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28. ~ 8. 7.)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평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문화상품 등에 대한 가치 평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교육경비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경비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안전인증기관 등의 장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인증·검사, 평가, 정보제공, 교육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생략)	제23조의4(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u>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평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문화상품 등에 대한 가치 평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수료) ① 법 제2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u><단서 신설></u>	제15조(수수료) ① ----- -----. <u>다만,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u> <u>청장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u> <u>「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u> <u>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u> <u>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u> <u>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u> <u>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u> <u>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u> <u>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①·② (생략) ③ 삭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하려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④ ----- ----- ----- ----- ----- 하 며, <u>교육경비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u>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u><단서 신설></u>	제17조(수수료) ① ----- ----- ----- <u>. 다만, 안전인증기관 등의 장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u> <u>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4518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2585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 락 처	(043) 870 - 544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연 락 처	(044) 201 - 409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3150 - 1306